

감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저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1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그리고 자금계산서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준용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운영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201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1. 4.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권 오 용

